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9. 5.

발 의 자 : 김태근 외 10명

1. 제안이유

○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전기료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공동전기료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료”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과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2.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3.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4. 공용관리소 및 관리소 저수조용 전기료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한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달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

참 고 법 령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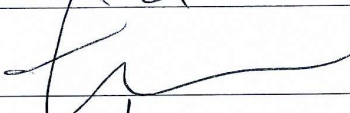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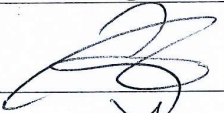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서명

의원명	서명	날인
김도원	김도원	
김민재	김민재	
이호진		
김영호	김영호	
박시현		
구각재	구각재	
이강민		
유서유		
유지석		
한정우	한정우	
허복	허복	